UCP 해설

유 하상

제 2 주

UCP 제1조-6조

유 하상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UCP 600의 개정 배경

(1)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의 필요성 제기

■ 신용장 분쟁 발생 현황

- ❑ 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 하지만
- ❑ 은행이 잘못 취급/어구의 해석의 상이시
- ❑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
- ❑ 지난 10여 년 동안(UCP 500의 조문해석과 관련된 분쟁 건수
- ❑ Article 9,13, 14, 21, 23, 37 & 48의 7개 조문에 대한 분쟁건수가 58%를 차지
- ❑ 17개 조문은 거의 없었음(10년 동안 개정이 없었음)

■ 기타 개정 사유

- ❑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 ❑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 ❑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 ❑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 ❑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1)

구 분	주요 변경내용	비 고
○ 서류심사기간 및 하자서류의 통지기간 단축 §14(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선적서류 내도일 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5영업일 이내	2영업일 단축, 상당한 기간 표현 삭제
○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2(Definitions), §3(Interpretations)	모든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	취소가능신용장 조문 삭제
○ 용어 정의의 명확화 §2(Definitions)	정의(Definitions) 조항 신설 - 지급이행, 매입 등	용어 일관성 증대
○ 기준일자에 관한 해석 변경 §3(Interpretations)	- 선적기간상(기존) : from은 당해일자 포함 after는 당해일자 미포함 - 만기일 결정(신설) : from, after 모두 당해일자 미포함(제외)	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에 관해서만 적용되던 일자를 만기일 등 모든 일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2)

○ 서류의 심사기준과 일치하는 제시 §15(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제조건, UCP600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규정에 의거한 서류 제시 필요	"in compliance with L/C terms"를 "complying presentation" 개념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시적인 내용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내용도 포함
○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7(Issuing Bank Undertaking)	신용장 발행은행의 확약에 포함 반영되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 전에 할인(선지급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	조항 신설
○ 지정은행 개념 신설 §12(Nomination)	신용장의 확인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등을 반드시 지정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지정은행만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하자통보방법 §16(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하자통보 요건 강화 - 지급거절의 사실 명시 - 서류의 행방 명시방법 추가	서류의 행방 명시방법이 두 가지에서 네 가지로 늘어남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제1조 조문해석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 ("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 한다.

❖ UCP의 임의 규칙성 강조

✓종전의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 당사자가 준거 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UCP가 "법"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

✓이에 따라 UCP 60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신용장에 UCP 600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채택과 준거문언 표시

- This L/C is subject to 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

① SWIFT로 전송되는 신용장(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Message Type 700(MT700)을 이용하고 있으며, UCP 준거 문언은 다음과 같다.
"40E/APPLICABLE RULE : UCP LATEST VERSION"
"이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일자 기준 발효 중인 ICC의 UCP가 적용된다."

<표> SWIFT 방식 신용장의 적용 규칙에 대한 설명

CODE 명	CODE의 의미
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UCP가 적용된다.
EUC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eUCP가 적용된다.
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UCP와 URR가 적용된다
EUCPURR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eUCP와 URR가 적용된다.
ISP LATEST VERSION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ISP가 적용된다.
OTHR	본 신용장은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주: URR : 은행간 대금결제에 관한 통일규칙, ISP :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OTHR : '/' 뒤에 35컬럼 이내에 해당 규칙이 언급된다.(예 : OHTR/SUBJECT ENGLISH LAW)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

②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 UCP는 화환신용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

➢ 예컨대 개설은행의 의무(7조), 신용장의 통지 및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의 통지(9조), 일치하는 제시(15조) 등이 적용 가능한 조항,

➢선적서류 관련조항(19-25조)나 보험서류와 부보범위(28조)는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

③ 보증 신용장 개설 시 적용 가능한 일반적 규칙은?

✓보증신용장은 UCP 600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 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 (ISP 98)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임

✓UCP 600은 어음만을 요구하는 단순한 보증신용장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보증 신용장(예컨대 장기간 또는 자동연장 조건이나, 법률의 적용에 의한 양도 등)의 경우는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ISP 98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신용장 통일규칙은 원래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제정되었으므로 Standby LC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Standby LC 를 위한 통일규칙인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을 제정을 함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

④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신용장에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당사자를 구속, 제2조에 개설의뢰인에 대한 당사자(party)라는 표현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의 고객이라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함.(참고로 특수한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고객이 아닌 경우도 있다.)

◆ 개설의뢰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UCP 규정을 적용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예컨대 제20조 c항 2에서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에 선적되고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이 전항해일정을 커버하면 환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선적되면 환적이 허용되므로 개설의뢰인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만 컨테이너에 선적되더라도 환적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다.

SWIFT에 기재하는 예

“47A : Additional conditions SUB-ARTICLE 20(c) 2 DOES NOT APPLY"

신용장 발행일 이전 일자를 표시한 서류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47A : Additional condition : DOCUMENTS MUST BE DATED EARLIER THAN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REDIT" 즉,

"서류는 신용장 발행일 이전 일자를 표시할 수 있으나, 서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언을 삽입해야 한다.

제2조 정의

■ 제2조 조문해석

제 2조 정의

통지은행(advising bank) :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발행의뢰인(applicant) :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

은행영업일(banking day) : 이 규칙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

수익자(beneficiary) : 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 받는 당사자.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 신용장의 재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

확인(confirmation) : 발행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확인은 행의 확약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

신용장(credit) :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며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 이행할 발행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

제2조 정의

■ 제2조 조문해석

지급이행(honour)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후 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발행은행(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매입(Negotiation) : 상환이 지정은행에 행해져야 할 은행영업일에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환어음(지정은 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및/또는 서류의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 :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제시(Presentation) :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제시인(Presenter) : 제시를 행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신용장 사용방법(honor의 정의 추가)

✓ UCP500 :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

✓ UCP600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구분,

✓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통지은행

✓주로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이 된다.

✓간혹 통지은행이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용되는 다른 은행을 제2통지 은행이라고 한다.

개설의뢰인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party)

☞'당사자'라는 의미를 신용장 하에서 개설신청인이 의사 결정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거래(혹은 신용장 취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그럼에도 당사자(PARTY)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은행영업일(Banking day)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하는 날.

1)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중(regularly open) 일 것,

2) 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지급, 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업을 할 것의 두 가지 원칙이 모두 성립해야 함

두 번째 원칙은 몇 몇 국에서 토요일 아침에 은행 영업을 하지만 소매금융 업무 (예금, 인출 등)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 이 경우 은행은 '정식으로 영업'은 하지만 이 규칙에서의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불능(가능)신용장

✓UCP 500 : 취소가능 혹은 취소불능의 두 가지로 정의

✓UCP 600 :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소 불능한 약정이라고 정의하여 취소가능 신용장의 적용 자체를 배제. 즉 신용장은=취소불능신용장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개설은행

일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이 되고 수입상이 운송서류의 통지처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설은행이 그 자신을 위해 개설한 은행이 된다.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 일치성 판단기준

✓ 서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문면상(on its face)으로만 일치하는 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UCP 500와 같음.

✓ 문면상이란 용어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삭제.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 강화된 것

❖ 서류심사기준 4가지.

✓ 거울 이미지 기준 : 엄격일치 기준. 현재의 실무계의 현상과는 동떨어진 것

✓ 실질적 일치 기준 :.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 이중적 기준 : 개설은행에게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 개설의뢰인에게는 실질적 일치의 기준이 적용

✓ 합리적 서류 심사자 기준: UCP 600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 모순이 되지 않으면 됨, 사소한 타이핑 실수가 하자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ISBP)

☞일치하는 제시

1) 신용장 조건, 2) UCP 600의 적용 가능한 조항, 3)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동시에 충족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⑨ 확인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인

<표> SWIFT 신용장의 확인에 대한 지시

CODE 명	CODE의 의미
CONFIRM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MAY ADD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은 확인을 할 수 있다.
WITHOUT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비수권확인(silent confirmation)이란?
수출상의 거래 은행이 신용장 거래 은행의 요청이나 수권 없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정적인 지급을 확약하는 것

확인과 다른 점

1) 개설은행의 확인에 대한 요청이나 수권이 없으며,
2) 비수권 확인자는 확인은행과는 달리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신용장 수익자와의 별도 계약 약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확약을 하며,
3) UCP에서 규정하지 않은 실무절차라는 점

따라서 비수권 확인자는 확인은행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큰 위험을 안고 거래를 하게 됨
(다만 비수권 확인자가 신용장 수익자와 별도 약정을 하여 고객에게 소구권을 행사한다거나 다른 안정책을 마련한 경우, 오히려 확인은행보다 비수권 확인자가 위험이 더 적을 수도 있다.)

비수권 확인이 생기는 주된 이유

1) 개설은행이 확인신용장 개설 요청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확인신용장의 개설을 꺼리기 때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국가 신용도 등이 낮으면 수출상 거래은행에 대해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결제(honor)의 의미

연지급신용장 만기전 지급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을 동일 선상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최종적인 책임에 관한 "Honour"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

그러나 Honour의 개념 도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은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대금지급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히 규정(제7조, 제8조, 12조 등에서)

☞ 신용장의 이용 방법으로는 매입(negotiation), 일람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가 있는데, Honor는 이 중에서 매입을 제외한 지급, 연지급, 인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지정은행

✓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은행. 개설은행이 특정은행을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

✓ SWIFT 신용장에서는 41 Field 의 이용 가능 조건에서 "available with ABC bank by 로 되어 있으면 ABC 은행이 지정은행이 되며, available with any bank by로 되어 있으면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 지정(nomination)에 대해서는 제13조 참조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매입(Negotiation)의 의미

❖ 매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Negotiation'의 범위 확대그 개념을 단순히 환어음이나 서류를 사전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에 한정

❖매입의 범위 확장

✓UCP 500 : 환어음이나 서류를 사전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UCP 600 :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것 외에 지정은행이 대금을 상환 받기 이전에 대금 지급할 것을 동의하거나 사전금융을 제공하는 것 까지도 'Negotiation'의 범위에 포함

❖매입의 조건

1) 매입의 주체 : 지정은행이고,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하는 것은 정당한 매입이 아님
2) 일치하는 제시 : 매입하기 위한 서류나 어음의 조건은 일치하는 제시이어야 함
3) 매수(purchase) : 매입의 정의는 매수하는 것. 매수의 방법은 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상환의무가 있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방법에 의함
4) 환어음 및/또는 서류 : 매입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이 있는 경우에는 환어음을 포함하고, 환어음이 없는 경우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
5) 결국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화는 것

❖지급이 아닌 여신의 공여

"환어음의 가액을 공여"란 표현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이 아닌 일종의 여신의 제공임을 더욱 분명히 함. 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장의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 것

제2조 정의

■ 제2조 주요 내용

제시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

1) **신용장 조건하에서 서류의 인도**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발송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해 은행에 접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인도된 서류 자체**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이 서류의 검토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인도된 서류가 있다면 제시로 간주됨

제시자

수익자나 제시를 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수익자, 매입은행이 제시자가 될 수 있다. 즉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3조 해석

■ 제3조 조문 해석

이 규칙에서:

✓단수형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 복수형 단어는 단수형 포함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

✓서류는 수기 ,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에 의하여 서명 가능

✓공인, 사증, 증명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부전에 의하여 충족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은 독립된 은행으로 본다.

✓서류의 발행인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립적인(independent)”, “공인된(official)”, “유능한(competent)” 또는 “국내의(local)”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 이외의 모든 서류발행인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서류에 사용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한(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와 같은 단어는 무시

✓“~경에(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건이 명시된 일자 이전의 5일부터 그 이후의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행하는 약정으로서 초일 및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제3조 해석

■ 제3조 조문 해석

✓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라는 단어는 선적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 “before” 및 “afte)”라는 단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

✓ “from” 및 “after”라는 단어는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

✓ 어느 개월의 “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각각 해당 개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양끝의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어느 개월의 “상순(beginning)”, “middle” 및 “end”이라는 용어는 각각 해당 개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양끝의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제3조 해석

■ 제3조 주요 내용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으면 수익자와 매입은행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조건 변경을 받도록 해야 함

- 예컨대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의 경우 국내법으로 신용장 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 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 조건부 취소불능 신용장** : "Irrevocable"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건들

-Shipment or negotiation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s.
(선적 또는 매입은 이후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를 것)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 by us.
(선박명은 개설은행이 지명할 것임)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ABC Co.
(송품장은 매입자의 지사 ABC회사의 서명(부서)이 되어야 함)

-Payment will be made only on realization of Export proceeds against export L/C No. XXX.
(수출 신용장 OOO에 상응하는 수출이행이 수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L from the Authorities.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당국의 수입허가를 획득할 경우에 발효됨)

제3조 해석

■ 제3조 주요 내용

서명
신용장에서 육필서명이나 자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서명할 수 있음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해 만족될 수 있음
이는 신용장의 조)는 추상성 때문에 실질 관계의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명, 표시, 스템프 또는 라벨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은행이 일일이 확인불가능)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
한국 소재 A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홍콩 소재 A은행에 서류 제시는 개설은행에 대한 서류제시로 볼 수 없다. (혼선 방지)
-동일 국가에 있는 같은 은행의 지점은 동일 은행으로 간주
-신용장상 지정은행이 한국 하나은행 전주지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 하나은행 전주지점은 물론 다른 어떤 지점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에 매입 제한을 두는 경우 개설은행이 동일 국가에 있는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특정 은행만으로 제한을 두어야 함

제3조 해석

■ 제3조 주요 내용

서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서류 발행인의 자격을 모호하게 함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의 의도가 서류 발행자의 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의도인 경우에는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서류 발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기간 계산표현의 변경

선적기간과 관련해 'to', 'until', 'till', 'from'이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고 'after'가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after는 물론 from도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UCP 600 제3조)

제3조 해석

■ 문3-19 수익자 증명

➢T/T 등의 거래에는 없고, 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선적하고 바이어에게 선적통지나 선적서류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수익자가 직접 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의 공식문서로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를 제기할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를 만들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일종의 각서

제3조 해석

■ 제3조 주요 내용

BENEFICIARY'S CERTIFICATE

DATE :

L/C NO. :
COMMODITY :

QUANTITY :
AMOUNT :
DESTINATION :
NAME OF VESSEL
ON BOARD DATE :

WE HEREBY CERTIFY THAT

SIGNED BY _____

제4조 신용장과 계약

■ 제4조 조문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a.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확약은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발행의뢰인에 의한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 받지 아니한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신용장과 계약

■ 제4조 주요 내용

①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에 토대를 두고 그 계약의 한 부분으로 성립하지만, 신용장 거래 자체는 그 계약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은행의 서류 심사시 거래에 대한 전문성 문제, 처리 비용과 시간문제, 잠재적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급 수단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장점이 훼손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인식에 근거

– 신용장 독립성 및 추상성의 예외(fraud rule)

제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기 또는 위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당해 신용장의 대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원칙

제4조 신용장과 계약

■ 제4조 주요 내용

② 과도세밀 명세 금지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 계약이나 견적 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과 기초계약간의 독립성 원칙 구현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신용장을 발행할 때 발행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 개설 의뢰인의 신용장의 일부분으로써, 계약서 사본이나 proforma invoice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개설 은행이 제어해야 함.

-예컨대 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이 과도한 상품 명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45A(DESCRIPTION OF GOODS) :
45,300 kgs of stainless steel wire SUH660(bond coated) as per offer NO. 100114852 dated June 22, 2010 a copy which is being sent by express courier and forms an integral part of this credit.

이처럼 OFFER를 추가로 보냄으로써 신용장에 과도한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장 당사자에게 실질관계와 큰 상관없이 서류 심사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어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어긋나므로 신용장 개설시 억제되어야 한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 제5조 조문 해석

제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① 신용장의 추상성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 신용장 거래의 본질이 서류상의 거래이며 그 서류를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라는 표현을 은행이란 표현으로 한정. 은행은 서류상의 내용으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수익자 또는 개설의뢰인을 위해 행동한다. 한편 은행은 서류에 근거하여 결정하되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과는 관계가 없다.

-예컨대 물품이 개설의뢰인에게 인도되고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개설은행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익자는 물품이 개설의뢰인에게 인도되었으므로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제5조

■ 제5조 조문 해석

사례 1 :
신용장 조건 : 선하증권 1통을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제시할 것. 이 신용장하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는 서류를 개설은행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원본 선하증권의 일부를 개설의뢰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직접 제시 여부에 상관없이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시킬 경우 수익자는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하자의 여부는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례2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 대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의 실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와 상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 제5조 조문 해석

사례 3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그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례4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 독립 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이 경우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개설의뢰인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제시되는 경우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또한 그로 인하여 신용장이 취소불능에서 취소가능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 원칙에도 반한다 볼 수 없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조문 해석

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a. 신용장에는 그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을 또는 그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발행은행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b.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c.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c.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d. ⅰ.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 기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기 된 유효 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 기일로 본다.

ⅱ.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의 장소는 제시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의한 제시장소는 모든 은행의 장소이다. 발행은행의 장소가 아닌 제시장소는 발행은행의 장소에 추가된다.

e. 제29조 a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제시는 유효 기일에 또는 그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①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익자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의 이용가능성을 모든 은행(any bank)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매입신용장밖에 없었는데 UCP 600에서는 모든 신용장으로 확대되었다.

지정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반드시 지정의 승낙 여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정은행이 단순히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지정은행이 지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신설함

종전의 조항에는 없던 지정은행의 서류발송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지정은행이 서류의 제시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지급이나 인수를 하거나(honour) 혹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당 지정은행은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반드시 발송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②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조항이 없어 사용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에 사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문면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용방법에 따른 신용장의 유형

- Sight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with ABC Bank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지급신용장)
- Deferred Payment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at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with ABC Bank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연지급신용장)
- Acceptance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s at 60 days after sight.(인수신용장)
- Negotiation L/C : This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BC Bank of beneficiary's draft(매입신용장)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연지급신용장

1) 대개의 경우 수출지의 연지급 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 은행일 때 사용된다.
2) 기한부 신용장으로만 사용된다.
3) 무어음 신용장. 본래 기한부 거래에서는 반드시 환어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환어음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4차개정(UCP 400)에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지정은행이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연지급 약정서를 수출상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수 신용장과 동일. 그러나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수출상은 환어음을 할인 받아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의 연지급 약정서를 담보로 선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UCP 600에서도 지정은행이 연지급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지급신용장에도 할인 허용규정 신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 받은 은행(nominated bank)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으로, 즉, 연지급은행도 만기 이전에 선지급이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 인수 신용장

✓ 수익자가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부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와 인수은행으로 지정된 다른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 개설은행이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서류가 제시되면 이를 심사한 후 개설은행이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가 된 이상 만기에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약정된 경우 그 지정된 다른 은행이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 그러나 만일 지정은행이 어음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대신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신용장에서 인수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인수은행이 인수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는 신용장상 당연한 청구권이지만, 새로이 개설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 매입신용장

- ✓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이 추심 전에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서류 및/또는 환어음을 제시하면 수익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매입은행)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 ✓ 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어음 없이 서류만의 매입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경우 보증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수익ㅈ의 확약서만에 의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 ✓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것은 개설은행은 최종 지급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개설은행은 지급하였지만 개설의뢰인이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할 경우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러나 단순한 매입은행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이 부도 반환된 경우에 매입의뢰인, 환어음발행인 등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상환청구권이 없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③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이 사용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필요 서류의 하나로 개설신청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환어음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시해야 함

④ 신용장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의무 이행 또는 a입을 하기 위해 명시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최종 기일로 간주된다.(UCP 500 제42조 a 항)

- ✓ 한편 서류를 제시하는 것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완료하는 것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효 기일까지 지급, 인수,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일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최종이로 하면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수익자가 미리 예상하기가 곤란하여 수익자가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효기일을 제시를 위한 최종일로 규정하게 되었다.
- ✓ 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원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류제시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ISBP 20항) 상업신용장에서 운송서류 원본 제시가 요구되지 않았다면 수출상이 운송서류 원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에게 직송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선적일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6조 주요 내용

⑤ 신용장에서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을 제시를 위한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도 제시를 위한 장소로 포함된다.

수익자는 직접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시는 신용장에서 명시한 유효기일 이내이며,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이내여야 한다.

⑥ 유효 기일이나 제시를 위한 최종 기일의 연장을 설명하는 제29조 a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직접 또는 수익자를 대신한 은행 등의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유효기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에 대한 보호 또는 권한부여 문구.(7조, 8조 및 12조(b)) 특히, 연지급용장의 지정은행도 포함하여 명시.

☞ 7조 (c) 및 8조 (c) 와 함께, 지정 은행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개설 은행이나 개설 의뢰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항임. 특히,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연지급 확약(D.P.U)에 대한 사전 지급이나 구매(purchase)에 대해 수권을 주는 것으로 규정함.

감사합니다.

PDF created with pdfFactory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